

서울특별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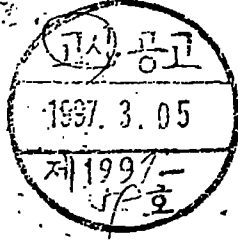
우 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 750-8716/7 전송 750-8730
 처리부서: 주택개발과(중구 서소문동 서소문 별관 2층) 담당: 정 병 운

문서번호: 주개 58531-438

시행일자: 1997. 3. 5

(경유) (제 1 안)

수신: 내부결재



취급		시 장
보존		
주택국장		/
주택개발과장	전결	법무담당관 심차필 (고시안 심사)
개발 2계장		
기안	정 병 운	
		협조

제목: 신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(구역의 범위변경 및 사업계획)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75호('96. 4. 3)로 구역지정결정(구역의 범위)된 신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,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개정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구역변경지정결정(구역의 범위변경 및 사업계획) 및 지적승인 신청이 있어,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결과 별첨 고시(안)과 같이 심의가결되었기,

2. 도시재개발법 제4조(재개발구역의 지정) 규정에 의거 구역변경지정결정(구역의 범위변경 및 사업계획)하고, 도시계획법 제13조(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) 규정에 따라 지적승인하며,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(재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)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코자 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첨부 1. 고시(안) 1부.
 2. 신청서류 1건. 끝.

(제 2 안)

수신: 총무처

제목: 관보게제 의뢰

아래와 같이 관보게제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게재구분: 고시
2. 게재건명: 신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 및 지적승인
3. 법적근거: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



첨부: 고시문 사본 2부. 끝.

서울특별시

(제 3 안)

수신: 건설교통부장관

참조: 주택관리과장

제목: 신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 및 지적승인 보고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75호('96. 4. 3)로 구역지정결정(구역의 범위)된 신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, 별첨과 같이 구역변경지정결정(구역의 범위변경 및 사업계획) 및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.

첨부: 1. 고시문 사본 1부.

2. 도면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(제 4 안)

수신: 마포구청장

참조: 재개발과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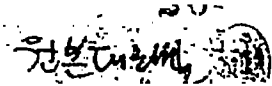
제목: 신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 및 지적승인 통보

1. 귀구 제개58531-917호('96. 9.19)·제개58531-201호('97. 2.27)와 관련입니다.
2. 위 호로 구역변경지정결정 및 지적승인 신청한 신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, 별첨과 같이 구역변경지정결정(구역의 범위변경 및 사업계획) 및 지적승인하였기 통보하니,
3.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해당부서에 알리어 관련업무 추진에 착오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: 1. 고시문 사본 1부.

2. 도면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

(제 5 안)

수신 수신처참조

제목 신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 및 지적승인 통보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75호('96. 4. 3)로 구역지정결정(구역의 범위)된 신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, 별첨과 같이 구역변경지정결정(구역의 범위변경 및 사업계획) 및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기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1. 고시문(사본 1부)

2. 도면 1부. 끝.

주 택 재 개 량 과 장

수신처 도시계획과장, 시설계획과장, 도로계획과장

고 시 (안)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7 - 59 호

제1차 심사(1997. 2. 3)	제2차 심사(1997. 2. 3)	제3차 심사(1997. 2. 3)
김영환	김영환	김영환

신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75호('96. 4. 3)로 구역지정결정(구역의 범위)된 신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,
2.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역변경지정결정(구역의 범위변경 및 사업계획)하고,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적승인하며,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발과와 마포구 재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1997년 3월 일

서울특별시 장

가. 재개발사업의 명칭 : 신공덕제3주택재개발사업

나. 재개발구역의 위치 및 그 면적

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당 초	변 경	증·감	
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2-264일대	14,569.0	15,408.0	증) 839.0	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역의 범위변경 및 사업계획결정

다.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

(1) 도로결정조서



구분	규모				사용 형태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						
신설	소로	2	1	8M	일반 도로	구획 도로	27	신공덕동 10-34	신공덕동 10-44	도로 신설 및 확폭
신설	소로	3	1	6M	일반 도로	구획 도로	96	신공덕동 11- 5	신공덕동 11-24	
신설	소로	3	2	6M	일반 도로	구획 도로	122	신공덕동 2-123	신공덕동 2-601	

라. 건축시설계획결정조서

구분	획 지		건축 구분	건폐율	용적율	층 수 및 높이(M)	주된 용도
	구 분	면 적 (㎡)					
신규	택지 1	11,606.45	신축	25% 이하	250% 이하	22층이하 59.6M이하	분양아파트
신규	택지 2	2,309.04	신축	25% 이하	250% 이하	18층이하 59.6M이하	임대아파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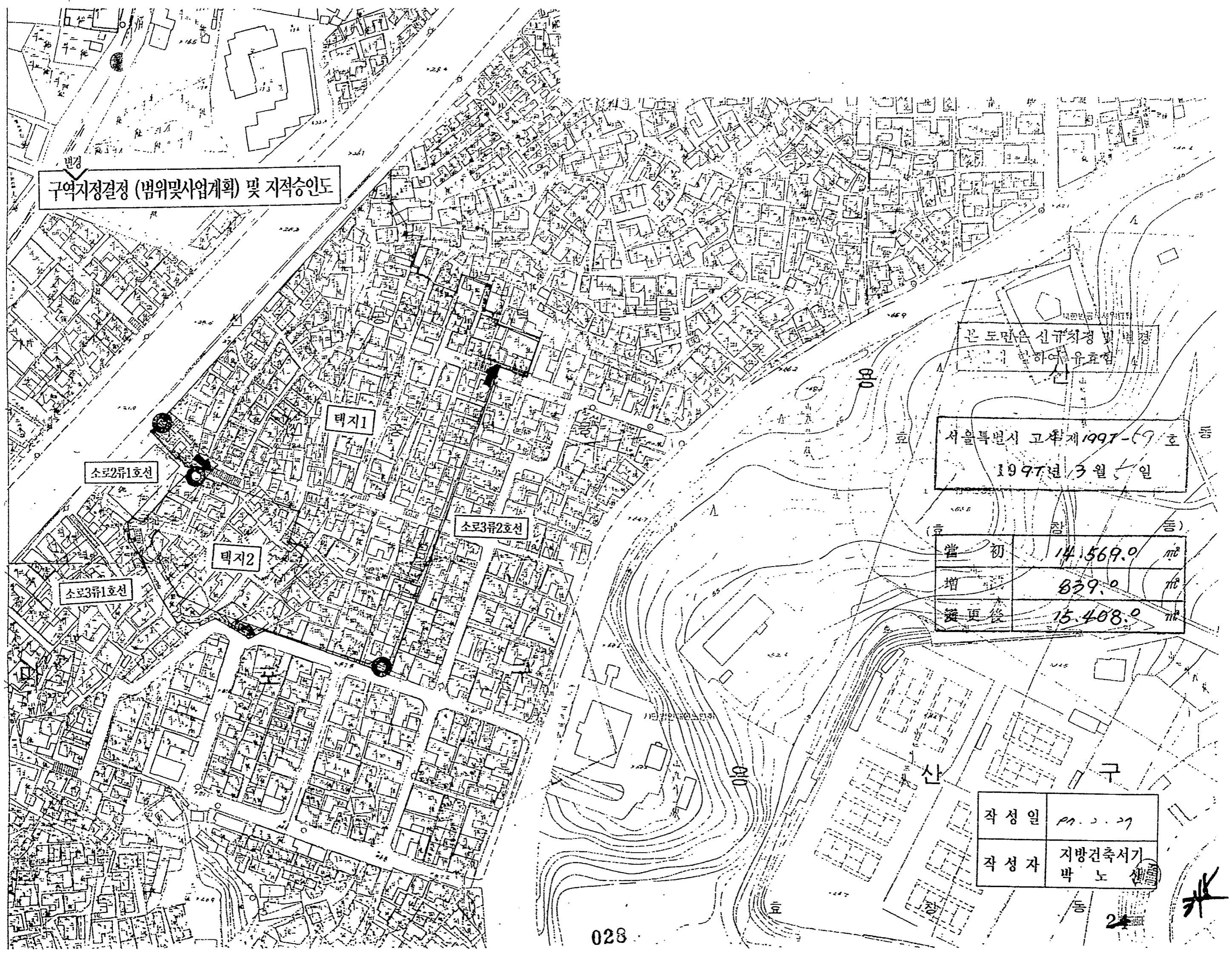
※ 주택의 규모별 비율

- 전용면적 60㎡ 이하 : 전체건립주택수의 50%이상
- 전용면적 85㎡ 이하 : 전체건립주택수의 80%이상

마. 사업시행예정시기 : 구역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

바. 구역변경지정결정 및 지적승인도면 : 생략(서울특별시 주택개발과의 마포구 재개발과에 비쳐된 도면과 같습니다)

구역지정결정 (범위및사업계획) 및 지적승인도



본 도면은 신규측량 및 변경
사항이 없어야 유효함

서울특별시 고추계 1997-69 호 등
1997년 3월 5일

當 初	14,569.0	㎡
增 加	839.0	㎡
變 更 後	15,408.0	㎡

작성일	97.3.29
작성자	지방건축서기 박노현

지 적 도

SCALE=1:1200

변경
구역지정결정 (범위및사업계획) 및 지적승인도



구 사 번 호 PROJECT NO.	
구 사 명 칭 PROJECT TITLE	
기 사 NOTE	
설 계 사 DESIGNED BY	
구 조 사 STRUCT BY	
검 사 사 CHECKED BY	
승 인 사 APPROVED BY	
비 례 사 SCALE	
일 자 DATE	
도 면 사 NAME OF DRAWN	
지 적 도	

작성일	2011.2.27
작성자	지방건축서기 박노산

ARCHITECTS & ENGINEERS ASSOCIATION SEUL, KOREA
TEL 452-1971/2, 458-2488
FAX 455-1981